

## [시행 2020. 12. 31] [총리령 제1662호, 2020. 12. 31, 타법개정]

식품의약품안전처 (의료기기정책과) 043-719-3785

- 1 ( ) 이 규칙은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 ( ) ①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은 그 안전관리의 수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되, 안전관리의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, 3등급, 2등급및 1등급으로 구분한다.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- 1.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 또는 품목류별로 지정할 것
- 2.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사용목적에 따른 안전관리의 내용 및 수준을 고려할 것
- 3.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라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할 것
- 4.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를 고려할 것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 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을 지정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.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재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분류, 등급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3 ( ) 법 제4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4 ( 가 )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 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소재지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제조소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제조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- 1. 법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 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(법인은 제외한다)
- 2.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(법인은 제외 한다)
- 3.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품질책임자(이하 "품질책임자"라 한다)에 관한 서류
-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한다)를 확인해야 한다.
-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고, 제조업허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- 1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
- 2.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제조업자"라 한다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)



- 3. 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
- 4. 품질책임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관련 자격의 구분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5 ( 가, )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품목류별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 - 1. 품목류별 제조인증: 2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
  - 2. 품목류별 제조신고: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
-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,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- 1. 품목별 제조허가: 다음 각 목의 체외진단의료기기
  - 가. 3등급 또는 4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
  - 나. 1등급 또는 2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중 이미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제조허가 ·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체외진 단의료기기와 그 구조 · 원리 · 성능 · 사용목적 ·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체외진단의료기기
  - 다. 2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중 제1항제1호, 이 호 나목 및 이 항 제2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외한 체외진단의료기 기
- 2. 품목별 제조인증: 2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외한 체외진단의료기기로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
- 3. 품목별 제조신고: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중 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1호나목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외한 체외진단 의료기기
- 6 ( 가 )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.
  - 1. 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
  - 2. 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
  - 3.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. 다만,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9조제4항에 따른 기술문 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심사결과통지서(통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결과통지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
 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고, 제조허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  - 1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
  - 2.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명칭(제품명, 품목명 및 모델명)
  -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 범위 및 작성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7 ( 가 가 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 신청과 함께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및 요양급여대상 ·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신청서 등을 송부해야 하며,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조허가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 신청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·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 또는 요양급여대상 ·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결과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 신청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와 요양급여대상 ·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.
- 8 ( )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「의료기기법」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(이하 "정보원"이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
  - ② 정보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조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, 제조인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  - 1. 인증번호 및 인증연월일
  - 2.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명칭(제품명, 품목명 및 모델명)
- 9 ( )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제6조제1항제2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정보원에 제출해야 한다.
  - ② 정보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, 제조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  - 1.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
  - 2.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명칭(제품명, 품목명 및 모델명)
  - 10 ( ) ① 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.

## 1. 시설 기준

- 가. 제품의 제조공정이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소를 갖출 것
- 나.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관리검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실 및 시험시설 등을 갖출 것
- 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·자재 및 제품 등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실 및 보관시설 등을 갖출 것
- 라. 그 밖에 제품의 제조 · 관리 및 시험 · 검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· 기구 · 장비를 갖출 것
- 2.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
  - 가.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하여 실행할 것
  - 나. 조직구성원의 업무·책임·권한 등을 문서화하여 실행할 것
  - 다. 제조 및 품질관리의 실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와 기록을 문서로 작성 · 보존할 것
  - 라.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유지를 위해 내부감사 및 외부심사를 실시할 것
  - 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
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③ 제조업자가「의료기기법」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,「약사법」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,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,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「화장품법」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의료기기, 의약품·의약외품, 식품·식품첨가물, 건강기능식품 또는 화장품과 체외진단의료기기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을 때에는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의료기기, 의약품·의약외품, 식품·식품첨가물, 건강기능식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용

도로 이용할 수 있다.

- 11 ( ① 제조업자는 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·기구·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  - 1.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(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기 시험·검사기관에 위탁하거나 법 제5조제5항 또는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자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: 시험실 및 시험과 관련되는 시설·기구·장비
  - 2.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경우: 위탁한 공정과 관련되는 시설 · 기구 · 장비
  -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조업자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한 경우 그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.
- **12 ( )** ① 품질책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
  -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의공기사 또는 품질경영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
  - 3. 「자격기본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인한 의료기기 RA(Regulatory Affairs) 전문가 자격을 가진 사람
  - 4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대학등"이라 한다)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(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·공학·의학계열 분야(이하 이 조에서 "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분야"라 한다)를 전공한 사람
  - 5. 대학등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사학위 취득 후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
  - 6. 대학등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사학위 취득 후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체에서 1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7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(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, 해당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체에서 1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8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, 해당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체에서 3년(「고등교육법」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)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9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(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하되,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로서 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 단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체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10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졸업자 로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체에서 3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11.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체에서 6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②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1명 이상의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제조소에 2명 이상의 품질책임자를 둘 때에는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각각 분장하여 품질책임자 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.
  - ③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는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. 제조업자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수입업자"라 한다)가 모두 동일할 때에 해당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품질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
- 2.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이 법에 따른 품질책임자와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
- 3. 품질책임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업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
- 13 (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
  - 1.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(이하 "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"라 한다). 다만,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동반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는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2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임상시험 계획서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 승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
- 2.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
  - 3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
    - 가.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시약 또는 대조·보정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
      - 1) 기원 또는 개발경위와 검출 · 측정의 원리 · 방법에 관한 자료
      - 2)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
      - 3) 원재료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
      - 4)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
      - 5)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의 자료
      - 가) 분석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
      - 나) 품질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
      - 다) 표준물질 및 검체 보관 등에 관한 자료
      - 6)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
      - 7)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
      - 8)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
    - 나.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기구·기계·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
      - 1) 기원·발견 또는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
      - 2)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
      - 3)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
      - 4)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의 자료와 그 시험규격 및 설정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. 다만, 국내외에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설정한 시험규격 및 그 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      - 가) 전기적 · 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
      - 나) 방사선 안전에 관한 자료
      - 다)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
      - 라) 성능에 관한 자료
    - ✓ 5)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
      - 6)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
  - ②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임상적 성능시험의 목적 및 배경 등에 관한 사항
- 2. 임상적 성능시험의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
- 3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(이하 "임상적 성능시험기관"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
- 4. 임상적 성능시험의 책임자·담당자·연구자에 관한 사항
- 5.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사항
- 6.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선정 및 동의 등에 관한 사항
- 7.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보상 · 진료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기관,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 10호서식의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.
- 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변경승인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서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서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14 ( )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말한다.
- **15** ( )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"사회복지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시설을 말한다.
- 1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 · 제2호 · 제3호 · 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
- 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(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을 갖춘 것만 해당한다)
- 4.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- 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9조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(기본생활지원 및 자립생활지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), 부자가족복지시설(기본생활지원 및 자립생활지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),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기본생활지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) 및 일시지원복지시설
- 6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제1호 · 제2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
- 7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
- 8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
- 9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(수용시설을 갖춘 것만 해당한다)
- 10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, 및 「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,에 따른 교정시설
- 11.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
- 1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
-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제1항의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(이하 이 항에서 "수용자"라 한다)을 임상적 성능시험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- 1. 수용자에 한정하여 질병이나 질환 등이 발생할 것

- 2. 수용자의 질병이나 질환 등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
- 3. 수용자에 대한 보상, 진료 및 안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것
- 4.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용자를 그 대상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
- **16** ( ) ① 법 제7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라 진단·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(이하 이 조에서 "잔여검체"라 한다)를 임상적 성능시험에 사용하려는 자는 검체 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- 1. 잔여검체의 보존·관리·이용·폐기에 관한 사항
  - 2. 잔여검체의 익명화 등 개인정보의 보호·처리에 관한 사항
  - 3. 잔여검체가 제공되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
  - 4. 동의의 철회 방법과 그 철회 시 잔여검체의 처리에 관한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검체 제공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- ③ 법 제7조제3항제5호 본문에 따라 검체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.
- 1. 검체 제공자의 개인식별정보와 잔여검체를 분리하여 보관할 것
- 2. 검체 제공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익명화할 것
- 3. 검체 제공자와 잔여검체의 기록 · 정보에 대해 보안 조치를 실시할 것
- - 1. 임상적 성능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되,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개시할 것
  - 2. 임상적 성능시험 의뢰자,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장, 임상적 성능시험 책임자, 임상적 성능시험 담당자,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자 및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 등 임상적 성능시험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
  - 3.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, 진료 방안 및 그 밖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,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
  - 4. 임상적 성능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,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
  - 5. 매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심사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, 임상적 성능시험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적 성능시험 종료보고서를 제출할 것
  - 6. 임상적 성능시험을 종료한 경우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와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·운영에 관한 기록·자료를 임상적 성능시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할 것
  - 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서 임상적 성능시험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지킬 것
  -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· 관리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  - 18 ( 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을 변경·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기관,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을 변경·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와 심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19 ( ①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, 전문인력 및 기구(機構 )를 갖추어야 한다.

- 1. 시설: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실·시험시설, 검체의 보관시설,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보관시설 및 임상적 성능시험과 관련된 기록·자료의 보관시설 등을 갖출 것
- 2. <mark>전문인력:</mark>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,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관리자, 기록·자료의 보관책임자 등을 갖출 것
- 3. 기구: 심사위원회 및 임상적 성능시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무기구 등을 갖출 것
-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시설, 전문인력 및 기구의 세부 내용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**20** ( 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1.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
- 2.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- 3.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사무운영규정
- 4.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서류
- 5. 최근 2년간 임상적 성능시험(임상시험 또는 비임상시험을 포함한다)에 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에 관한 서류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, 공공기관, 법인·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내용을 게재해야 한다.
-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서 및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**21 ( )**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심사위원회 위원은 임상적 성능시험(임상시험 및 비임상시험을 포함한다)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. 이 경우 의학·치의학·한 의학·약학·간호학 또는 임상병리학을 전공하지 않고, 해당 임상적 성능시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1명(위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는 2명)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- 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⑤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임상적 성능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등의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 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설치 ·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**22** ( ) ①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- 1. 임상적 성능시험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상적 성능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임상적 성능시험 성적서를 작성·발급할 것

- 2. 임상적 성능시험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적 성능시험의 결과를 보고할 것
- 3.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기록과 문서를 임상적 성능시험을 종료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**23** ( 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(이하 "임상적 성능시험 교육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  - 1. 교육내용: 다음 각 목의 사항
    - 가. 업무 전문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
    - 나.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
    - 다.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
    - 라. 임상적 성능시험(임상시험 및 비임상시험을 포함한다)의 국내외 동향에 관한 사항
    - 마. 그 밖에 임상적 성능시험 교육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  - 2. 교육시간: 매년 8시간 이상
  - 3. 교육방법: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
  - ② 임상적 성능시험 교육은 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,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 관련 기관·단체 중에서 <mark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·단체에서 실시</mark>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적 성능시험 교육의 방법·절차 및 교육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**24 ( 가 )**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.
  - 1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사항
    - 가.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
    - 나. 대표자의 변경
    - 다. 품질책임자의 변경
  - 2.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조허가,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사항
    - 가.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
    - 나.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모양 및 구조, 원재료, 성능,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에 관한 변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 내용(원재료의 변경은 제조허가 및 제조인증만 해당한다)
  - ②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제조업허가증의 발급 및 제조업허가대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.
  - ③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, 변경인증 ·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보원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허가증의 발급 및 제조허가대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, 인증서의 발급 및 제조인증대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,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제조신고대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9조제 2항을 각각 준용한다.
  -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려는 자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정보원에 해당 변경사항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작성·보관하고 있는 변경사항 기록의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정보원에 제출해야 한다.
 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 · 변경인증 · 변경신고 및 변경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- 25 ( 가 )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 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수입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, 허가증의 발급, 허가대장의 작성 및 허가의 절차 ·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,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- 26 ( 가 )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수입하려는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이미 수입허가를 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(제조국·제조사 및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)의 동일한 제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- 1.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
- 2.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
- 3. 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. 다만,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제9조제4항에 따른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심사결과통지서(통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결과통지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제1항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정보원에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생략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.
-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제1항제2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정보원에 제출해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허가,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 한다.
- 1.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증의 발급, 수입허가대장의 작성, 첨부서류의 제출범위 및 작성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 고시: 제 6조제2항 및 제3항. 이 경우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- 2. 수입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의 발급 및 수입인증대장의 작성: 제8조제2항. 이 경우 인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- 3.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수입신고대장의 작성: 제9조제2항. 이 경우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.
- **27** ( ) ①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 계의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  - ② 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및 시험과 관련되는 시설ㆍ기구 및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  - 1.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기 시험·검사기관
  - 2. 법 제5조제5항 또는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
  - ③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입업자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 그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.
- **28** ( ) ① 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수입허가,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.
-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두어야 하는 품질책임자의 자격기준, 배치기준 및 겸임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.

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0조에 따른 변경허가, 변경인증, 변경신고 또는 변경보고의 대상, 절차, 방법 및 보고 기한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.

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.

- ✔ / 1. 차세대염기서열분석(Next Generation Sequencing) 검사
  - 2. 혈청, 혈장, 염색체, DNA(Deoxyribonucleic acid), RNA(Ribonucleic acid) 및 단백질 등에 대한 체외진단검사 중 식품의
  - 2. 열성, 열상, 염색제, DNA(Deoxyribonucleic acid), RNA(Ribonucleic acid) 및 단백실 등에 내안 제외신단검사 중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
  - 30 ( 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1. 제32조에 따른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  - 2. 체외진단검사에 관한 사무운영규정
  - 3. 최근 2년 이내의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에 관한 서류
 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 조사를 하거나 체외진단검사 관련 기관·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 식의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.
  -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변경인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그 변증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 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  - 31 ( 기간은 3년으로 하며, 그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시작한다.
    -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29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제30조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
   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에 받은 임상검사실의 체외 진단검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인증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    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시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한 경우 그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.
    - **32** ( )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<mark>"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"</mark>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
    - 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
    -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
      - 가. 시험실 또는 검사실
      - 나. 검체 보관시설
      - 다. 체외진단의료기기 보관시설
      - 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것으로서 체외진단검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
- 2. 다음 각 목에 따른 장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
  - 가.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치(제29조제1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)
  - 나. 중합효소연쇄반응기(제29조제2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)
  - 다. 원심분리기
  - 라. 냉장고 또는 냉동고
  - 마. 이미지기록장치
  - 바.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또는 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체외진단검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또는 기구
- 3. 다음 각 목에 따른 인력을 갖출 것
  - 가. 체외진단검사 책임자
  - 나. 체외진단검사 담당자 또는 연구원
  - 다.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자
  - 라. 체외진단검사의 기록 · 자료 관리자
- 4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
  - 가. 체외진단검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
  - 나. 체외진단검사 관련 인력의 업무·책임·권한 등의 문서화
  - 다. 체외진단검사 관련 결과 · 기록의 작성 · 보존 시스템 구비
  - 라. 체외진단검사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 검사 시스템 구비
-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**33** ( )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- 1. 제29조에 따른 체외진단검사의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것
- 2. 제29조에 따른 체외진단검사와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을 해당 체외진단검사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
- 3. 제29조에 따른 체외진단검사의 실시 중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
- 4. 제32조에 따른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기준을 유지할 것
- **가)**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1년마다 그 검사 능력을 측정 · 평가해야 한다. 다만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 능력을 측정 · 평가해야 할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측정 · 평가할 수 있다.
- 35 (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<mark>체외진단검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</mark>해야 한다. 다만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체외진단검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등 위탁내용을 게재해야 한다.
- 36 ( )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(이하 이 조에서 "기재사항"이라 한다)의 <mark>일부를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mark>
  - 1.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의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을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적을 수 없는 기재사항을 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적는 경우. 다만, 「의료기기법」제20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제품의 모델명은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어야 한다.
  - 2.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으로서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 그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는 경우

- **37 ( 가능 가능 가능 )**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<mark>"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</mark>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 다.
  - 1.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사항
    - 가. 제조업자(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제조자를 포함한다)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
    - 나. 수입품의 경우에는 제조국가명과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
    - 다. 제품명과 모델명
    - 라. 보관 또는 저장 방법
    - 마. "임상적 성능시험용"이라는 표시
    - 바. "임상적 성능시험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"이라는 표시
  - 2. 제1호 외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사항
    - 가. 법 제13조 각 호의 사항(같은 조 제1호의 사항 중 「의료기기법」 제20조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)
    - 나. 제조업자가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제조의뢰자와 수탁자인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
    - 다.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 · 구조 등 기술 정보에 관한 사항
    - 라. 방사선을 방출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특성 · 종류 등에 관한 사항
    - 마. 첨부문서의 작성연월
  - 38 ( )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.
  - 39 ( 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  -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40 ( )① 정보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(이하 이 조에서 "지원 사업"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사업 추진의 내용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 다만, 지원 사업의 성격 및 특성 등에 비추어 긴급하거나 집중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.
  - ② 정보원은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관계 기관·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정보원은 지원 사업의 계획, 점검 및 평가 등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, 정보원 임직원 또는 의료기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 사업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사업의 절차·방법 및 지원 사업 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제1662호, 2020. 12. 31. >(의료기기법 시행규칙)

- 1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 생략
- 3 (다른 법령의 개정)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수료		
전자민원	방문 · 우편민원	
1. 임상적 성능사험자료 검토	1. 임상적 성능시험자료 검토	
대상 1,495,000원	대상 1,662,000원	
2. 기술문서 검토 대	2. 기술문서 검토 대	
상:719,000원	상: 799,000원	
3. 그 밖의 경우: 158,000원	3 그 밖의 경우 176,000원	

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수료		
전자민원	방문 · 우편민원	
130,000원	145,000원	

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수료	
전자민원	방문 · 우편민원
85,000원	96,000원

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수료	
전자민원	방문 · 우편민원
1. 변경허가	1. 변경허가
- 임상적 성능시험자료 검토 대상:	- 임상적 성능시험자료 검토 대상:
1,009,000원	1,122,000원
- 기술문서 검토 대상: 551,000원	- 기술문서 검토 대상 612,000원
- 그 밖의 경우: 121,000원	- 그 밖의 경우: 135,000원
2. 변경인증: 82,000원	2. 변경인증: 93,000원
3. 변경신고: 39,000원	3. 변경신고: 43,000원

## 4 생략